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관련이 없는 인조대리석 제조용의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1. . ~ 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규격	덤핑방지관세율 (%)
중국	1. 찰코산둥(CHALCO Shando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찰코중주(CHALCO Zhongzhou Aluminum Co., Ltd.) 나. 찰코물자(CHALCO Materials Co., Ltd.) 다. 찰코청도경금속(CHALCO Qingdao Light Metals Co., Ltd.) 라. 찰코청도무역(CHALCO Qingdao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마. 찰코산둥신소재(CHALCO Shandong Advanced Material Co., Ltd.) 바. 찰코중주신소재(CHALCO Zhongzhou Advanced Material Co., Ltd.)	1. 인조대리석 제조용  2. 기타	0  13.99
	2. 롱커우동하이(Longkou Donghai Alumina Co., Ltd.)와 그 관계사인 얀타이진타이(Yantai Ji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 인조대리석 제조용  2. 기타	0  22.39
	3. 그 밖의 공급자	1. 인조대리석 제조용  2. 기타	0  13.99
호주	4. 알코아(Alcoa Of Australia Limite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 인조대리석 제조용  2. 기타	0  37.96

5. 그 밖의 공급자	1. 인조대리석 제조용	0
	2. 기타	37.96

비고 1: 제 3 호의 공급자가 제 2 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 3 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 2 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비고 2: 인조대리석 제조용(덤핑방지관세율 0%)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 83 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물품은 같은 법 제 108 조에 따른 사후관리의 대상이 된다.